**숭실리더십학생협회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숭실리더십학생협회로 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세계평화와 인간 잠재력 실현에 있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은 회장, 부서장(가치창출부, 대외협력부, 기획부, 홍보부, 인재관리부, 재무부)로 정의한다.

②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]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 임원진의 선출은 총회에서 동아리 내 투표로 선출된다.

( 전 임원진의 추천을 받은 동아리원, 희망 동아리원 모두 임원진 선출 조건에 부합한다.)

**제 3조 [임원진]**

① 회장은 부서장과 독립되어 동아리 내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재무부서장은 타 부서와 독립되어 동아리 전반적 재무사항을 수행한다.

③ 각 부서는 부서별 내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**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숭실리더십학생협회 동아리원은 숭실대 동아리 연합회 등록원에 등록된 경우와 실질적인 동아리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모든 구성원을 동아리원으로 인정한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집행부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공식적인 시험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18:00 부서별 정기회의시간을 가진다.

**제 2조 [총회]**

한 학기 별 진행하는 개강총회, Alumni 행사, 종강총회는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,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집행부가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① 재무부서장은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2022.04.01]

개정 1판 [2023.04.01]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